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관련 -

본 가이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차례

I. 개정이유 .....	1
II. 일반사항 .....	1
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6, 제18조의7) ...	1
②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관계(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	2
③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자동차(법 제2조, 영 제18조의7) ...	3
④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5) ...	4
⑤ 기축시설, 신축시설, 공공시설(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6, 제18조의9) ...	6
⑥ Q&A .....	7
III. 전용주차구역 .....	9
①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영 제18조의5) .....	9
② 설치기준(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및 영 제18조의6 제1항) .....	9
③ 설치기한(영 부칙 제2조) .....	10
④ 설치예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영 제18조의6 제2항) .....	11
⑤ 주차금지(법 제11조의2 제8항) .....	12
⑥ Q&A .....	13
IV. 충전시설 .....	15
① 대상시설(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5, 제18조의7) .....	15
② 설치기준(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7) .....	15
③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준(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7) .....	17
④ 설치기한(영 부칙 제2조) .....	19
⑤ 설치예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7 제3항) .....	19
⑥ 주차금지(법 제11조의2 제7항) .....	19
⑦ 충전방해금지(법 제11조의2 제9항 및 영 제18조의8) .....	20
⑧ Q&A .....	23
V. 기타 Q&A .....	31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관련 법령 가이드

## I.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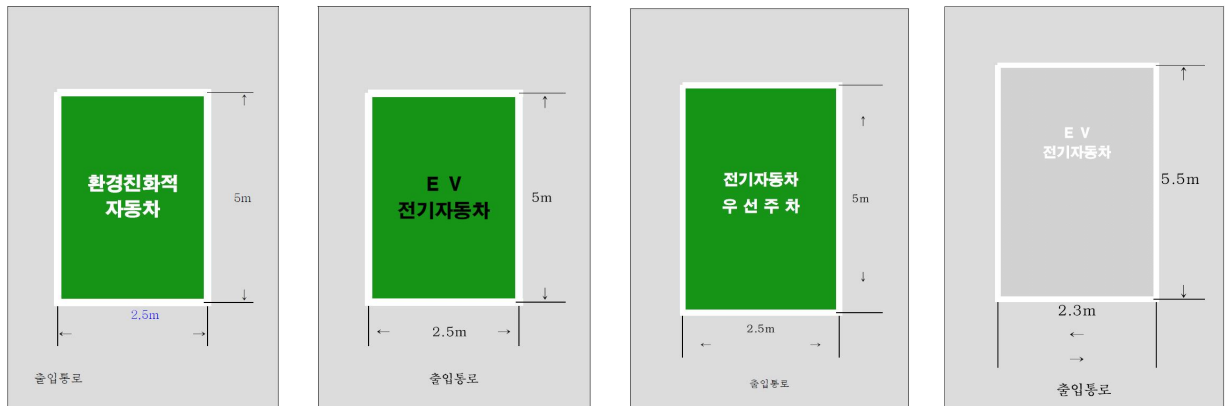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
- ②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 II. 일반사항

### 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6, 제18조의7)

- ① 전용주차구역 : 구획선, 문자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임을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주차구획

※ 차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시 전용주차구역 표시기준 신설 예정



<서울시 주차장 조례> <서초구 주차장 조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성북구 주차장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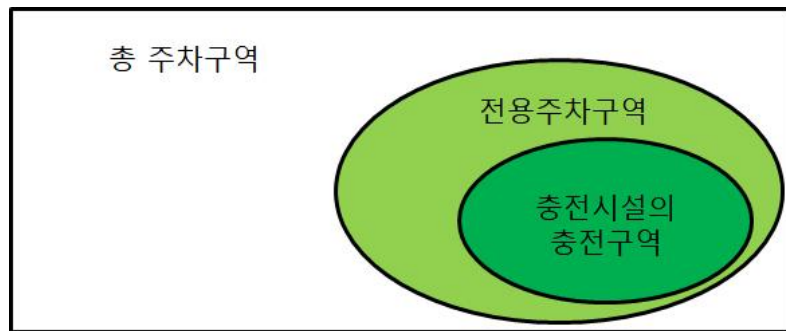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것으로서 ①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과 ②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③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구획선, 문자 등으로 충전구역임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주차구획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 2
-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 ②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관계(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갖추어야 하므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전용주차구역과 겹칠 수 있음
  - ② 다만,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설치하한이 5%인 반면, 충전시설 설치하한은 2%이므로,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이 최대 3%p가 존재할 수 있음. 그리고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경우라도 충전시설을 5% 설치한 후 이에 충전구역을 표시하고, 해당구역 이외의 장소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자동차의 주차구획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움



③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이라고 할지라도 충전구역 내의 주차는 일정 시간(1시간 또는 14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차구역으로서 기능이 제한됨

③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자동차(법 제2조, 영 제18조의7)

- ①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② 하이브리드자동차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③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④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분	이용대상	단속대상	비고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내연기관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축시설에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각각 5% 설치 ·공공시설 아닌 기축시설에서 각각 2% 설치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내연기관자동차	·공공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 일부 ·충전시설 없는 전용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한 경우
전용주차구역 이외 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내연기관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의설치 충전시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이하 “친환경자동차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④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5)

- ① ‘충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대상시설’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대상시설의 유형

<p>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p> <p>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다. 문화 및 집회시설</p> <p>라. 판매시설</p> <p>마. 운수시설</p> <p>바. 의료시설</p> <p>사. 교육연구시설</p> <p>아. 운동시설</p>
--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③ 총주차대수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단,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
- 총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대장 등에 총주차대수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함
- ④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대상시설을 판정
- ‘의무설치 대상시설’과 ‘비(非)대상시설’이 복합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시설유형’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주차장으로 공여된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판정
  - 설치된 총주차대수가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로 구분되는 취지의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되었거나, 건물의 구조상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상시설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판정 [각 용도의 시설별로 할당된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은 ①해당 취지의 등기, ②건축물대장 기재, ③관리규약(상가관리규약, 아파트관리규약 등), ④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설계도면, ⑤분양계약서, ⑥건축물현황도 등을 고려 가능]

- 설치된 총주차대수가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시설과 비대상시설이 함께 사용하는 총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판정

⑤ 기축시설, 신축시설, 공공시설(법 제11조의2, 영 제18조의6, 제18조의9)

- ① 기축시설(既築施設) :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② 신축시설(新築施設) : 기축시설이 아닌 시설
- ③ 공공시설 : 아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

1. 국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국립대학 등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관리하는 시설의 의미는 시설 임대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해당 기관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리사무를 他 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시설 소유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해당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로 보아야 함



## 6 Q&A

### 1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Q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중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 수량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의무설치 수량 이외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설치하한이 5%인 반면, 충전시설 설치하한은 2%이므로,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이 최대 3%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경우라도 충전시설을 5% 설치한 후 이에 충전구역을 표시하고, 해당 구역 이외의 장소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설치대상시설

Q 도로로 구분되는 2개의 단지(각 단지는 100세대 미만)가 1개의 통합관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통합하여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보아야 하나요? 각각을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로 보아야 하나요?

A 질의의 관리사무소는 통상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의 일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 단지를 도로가 관통하고 있더라도 단일한 자치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와 단일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단일한 단지로 볼 것입니다.

Q 동일필지 내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시설이 다수 있는 경우, 각각의 시설별로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A 친환경자동차법은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별로 법정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시설 상호간 주차구획으로 이용된다면,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설치 대상시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해당 시설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제1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주택법」 제15조, 제20조, 제54조 등)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는 100세대 미만이고, 판매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면, 해당 시설은 설치 대상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설치된 총주차대수가 판매시설용과 공동주택용으로 구분登記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거나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판매시설을 위한 주차구획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관리자는 설치의무가 없으나) 판매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경우”로서 설치의무를 부담합니다.

### 3 신축시설과 기축시설

Q 기축시설과 신축시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 기축시설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그 외의 시설은 신축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때, “건축허가를 받은”의 의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이 아닌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건축을 허가한 시점을 말합니다.

Q 리모델링 사업시 신축시설의 설치기준과 기축시설의 설치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A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리모델링된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기축건물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 4 주차단위구획

Q 법정 의무 주차단위구획은 50개 미만이지만, 임의로 주차단위구획을 추가하여 50개를 넘는 경우에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나요?

A 해당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상 총주차대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전기자동차 충전편의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임의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를 포함하길 권고 드립니다.

### Ⅲ. 전용주차구역

#### 1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영 제18조의5)

- 1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2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시·도는 2022년 7월 28일까지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함  
• (2022년 7월 28일 전후를 불문하고) 조례가 제·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주차대수의 하한은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은 100세대로 함(영 부칙 제4조)

#### 2 설치기준(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및 영 제18조의6 제1항)

- 1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대상시설을 정한 경우)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은 '5% 또는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2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의 하한

대상시설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 하한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 (既築施設)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기타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

- ③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④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의 최소수량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으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및 장애인 주차단위구획 등의 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전용주차구역 모두를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으로 설치 가능
  -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고 총주차대수가 산정하므로, 전용주차구역 역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
- 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2022년 1월 28일)에 따라 시·도는 2022년 7월 28일까지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함
  - (2022년 7월 28일 전후를 불문하고) 조례가 제·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기준을 적용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기타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 ③ 설치기한(영 부칙 제2조)

- ① 기축건물[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포함]의 소유자·관리자는 다음 기한까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대상시설		설치기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sup>1)</sup>	공공기축시설	2023년 1월 28일
	기타 기축시설	2024년 1월 28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2025년 1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설치 주차장		2023년 1월 28일

- ②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④ 설치예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영 제18조의6 제2항)

- ① (신축시설 또는 기축시설을 불문하고)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대상시설이어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시·도 조례에서 대상시설로 정한 경우에도 ①“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설치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따른 설치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시·도 조례에서 설치예외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하고, ②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
  -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설치예외의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설치예외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를 시·도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함[예 : 영 제18조의9 제2항에 따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 등)로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등이 없거나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1) 영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 ⑤ 주차금지(법 제11조의2 제8항)

- 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니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이지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으나, 법 제11조의2제8항의 명문의 규정과 법 제2조제2호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비록 친환경자동차규정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이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②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아니므로,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음
  -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고,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여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대상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즉, 자동차의 개념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아니며, 전용주차공간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주차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진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주차위치가 옮겨졌다는 등의 사실을 이의신청 기간 내에 블랙박스 그밖에 방법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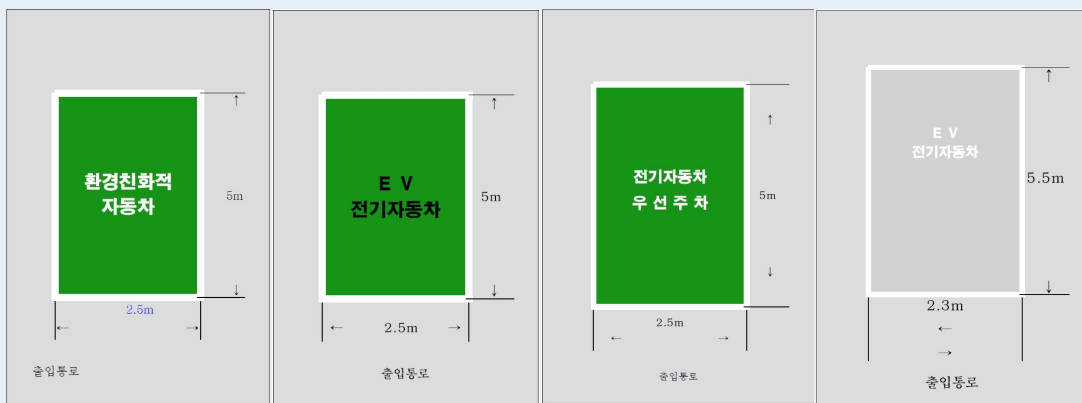
## ⑥ Q&A

### ① 전용주차구역 설치

**Q** 전용주차구역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구획에 구획선 및 문자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임을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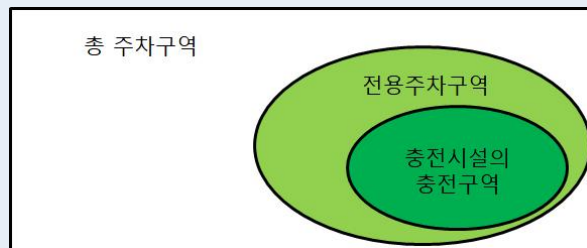


<서울시 주차장 조례> <서초구 주차장 조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성북구 주차장 조례>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표시도 가능합니다.

**Q** 충전구역 표시는 있으나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에 전용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나요?

**A**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통상 전용주차구역에 포함됩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차구획에 구획선 및 문자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임을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충전구역 표시'는 일반대중이 전용주차구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Q** 건설 중인 시설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은 『건설 중인 시설』이 아니라 『공사가 끝난 시설』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설치의무자를 소유자·관리자(입주자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건설 중인 시설』의 소유자가 될 자”는 『건설 중인 시설』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축주 또는 수분양자는 장래(건축물 완공, 소유권 취득 등)의 설치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설계자·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 주차위반

**Q**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임의로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A** 법적 의무 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은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로 보아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IV. 충전시설

### ① 대상시설(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5, 제18조의7)

- ① 대상시설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② 시·도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함
- ③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22년 1월 28일)에 따라 시·도는 2022년 7월 28일까지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함
  - (2022년 7월 28일 전후를 불문하고) 조례가 제·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주차대수의 하한은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은 100세대로 함(영 부칙 제4조)

### ② 설치기준(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7)

- ①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대상시설을 정한 경우)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은 5% 또는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②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의 하한

대상시설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 하한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공공기축시설도 2%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③ 시·도 조례로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과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특히,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전용주차구역은 5%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충전시설은 2%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즉, 공공기축시설이 전용주차구역을 5%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5%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충전시설을 갖춘 충전구역이 총주차대수의 5%에 해당하고, 충전시설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상시설		설치기준 하한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신축시설		5% 이상	5% 이상
기축시설 (既築施設)	공공기축시설	<b>5% 이상</b>	<b>2% 이상</b>
	기타 기축시설	2% 이상	2% 이상

- 4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5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 제9조 및 [별표 2]는 충전구역의 규격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구획선)과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함(아래 그림 중 흰색 실선과 그 안쪽 부분)

	구분	너비	길이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통상 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규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전용주차구역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이 아닌 확장형 또는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내에 충전구역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⑥ 시·도지사 이외의 자가 충전구역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충전구역표시도 가능
  - 다만, 주차구획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손쉽게 충전구역을 알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규격에 따를 것이 권고됨
  - 또한,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구역에서 주차·충전하고 있는 때에는 바닥면 표시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안내판 설치가 권고됨
- ⑦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 설치하는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완속충전시설의 비율 또는 완속충전시설 중 콘센트형의 비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⑧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2022년 1월 28일)에 따라 시·도는 2022년 7월 28일까지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함
  - (2022년 7월 28일 전후를 불문하고) 조례가 제·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기준을 적용

대상시설	충전시설 설치기준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③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준(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7)

- ①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친환경자동차규정」 제7조제1항제1호)

②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것(「친환경자동차규정」 제7조제1항제2호)

- ①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 ②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원칙적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충전시설이면 설치 가능. 다만, 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기관은 충전소 부족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충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단일제품만 충전이 가능한 방식을 지양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기관
1. 국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국립대학 등 <sup>2)</sup>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④ 설치기한(영 부칙 제2조)

- ① 기축건물[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관리자는 다음 기한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대상시설		설치기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sup>3)</sup>	공공기축시설	2023년 1월 28일
	기타 기축시설	2024년 1월 28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2025년 1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설치 주차장		2023년 1월 28일

- ②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⑤ 설치예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영 제18조의7 제3항)

- ① 시·도 조례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함
- ② 반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예외<sup>4)</sup>를 인정받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주차금지(법 제11조의2 제7항)

- ① 주차금지 대상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니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

3) 영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4) ①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설치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초지자체장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인 경우만 충전구역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입법방식은 전용주차구역內 주차금지의 경우도 유사함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정의를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이지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음. 법 제11조의2 제7항과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아니므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

## ② 주차금지 구역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영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시하는 ‘충전구역표시’는 일반공중(주차구획 이용자)이 충전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규격으로서 그 밖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충전구역표시도 가능하고, 해당 구역은 대상차량이 아닌 차량의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함

## ⑦ 충전방해금지(법 제11조의2 제9항 및 영 제18조의8)

- ①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함으로써 “충전을 방해”하여야 하고, 단순한 적치 또는 주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 제1항 제2호)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함으로써 “충전을 방해” 하여야 하고, 단순한 적치 또는 주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충전구역의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개별사례별로 충전이 방해되는지 여부를 현장여건에 비추어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③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 제1항 제3호)**

- 물건의 적치 또는 주차 행위가 충전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충전구역에 진입하는 통로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함으로써 “충전을 방해”하여야 하고, 단순한 적치 또는 주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개별사례별로 충전이 방해되는지 여부를 현장여건에 비추어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충전이 방해되는 경우라도 주차브레이크를 걸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

**④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⑥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이는 충전설비의 결함 또는 전원공급장애, 자동차의 성능 등의 이유로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라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sup>5)</sup>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다만,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충전방해행위에서 제외함
-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이는 충전설비의 결함 또는 전원공급장애, 자동차의 성능 등의 이유로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라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기기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두고 충전하는 것은 법 제11조의2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

5)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 친환경자동차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므로 전기이륜자동차는 법 제11조의2 제7항이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이 아님

## 8 Q&A

### 1 충전시설

**Q** 친환경자동차법에 규정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됩니다.

급속충전시설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으로 말합니다.

완속충전시설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것으로서 ①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과 ②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4호에 따라서 설치한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하는 완속충전시설로 볼 수 있나요?

**A** 해당 시설은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충전시설로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하는 완속충전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충전구역에 “충전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해당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또는 주차 등의 행위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Q 이동형충전기 또는 과금형콘센트도 의무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로 인정되나요?

A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는 의무설치 충전시설로 인정됩니다.

Q 완속다채널충전기의 경우 몇 개의 충전시설로 인정되나요?

A 완속다채널충전기는 동시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대수와 동일한 수량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충전속도가 과도하게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속다채널충전기 설치시 의무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대수량은 최대출력을 3kW로 나눈 값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CNG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하나요?

A CNG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반드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A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체적인 수량과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므로, 시·도의 조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도 되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한 충전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와 함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하고, 해당 구역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 장애인차량인 경우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Q** 일반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1조의2 제2항), 일반주차구역에 설치한 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에는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설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건설 중인 시설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은 『건설 중인 시설』이 아니라 『공사가 끝난 시설』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설치의무자를 소유자·관리자(입주자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건설 중인 시설』의 소유자가 될 자”는 『건설 중인 시설』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축주 또는 수분양자는 장래(건축물 완공, 소유권 취득 등)의 설치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설계자·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 충전구역의 표시

**Q** 충전구역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 별표 2에서 시·도지사가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구역의 표시’를 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충전구역표시도 가능합니다.

**Q** 과금형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A**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는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충전시설로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하는 완속충전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충전구역에 “충전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임의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따른 "충전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A**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따른 "충전구역의 표시"의무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관리자는 임의로 설치한 충전시설에 해당 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로 보아서, "충전구역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금지 대상구역

**Q**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단속대상구역은 어디인가요?

**A**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구획선, 문자 등으로 충전구역임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주차구획입니다.

**Q** 충전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아직 이용자에게 충전시설로서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도 단속대상구역에 해당하나요?

**A** 아직 충전시설로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타인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에 이용되던 충전시설이 일시적인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Q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 제9조(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충전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별표 2]에 따른 충전구역의 표시가 아닌 일반적인 바닥에 문자로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표시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 제9조(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에 따른 표시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시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로서, 해당 표시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면의 전기자동차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sup>6)</sup>

Q 충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충전구역의 표시”가 없는 경우,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면의 전기자동차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Q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는 어떤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나요?

A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전용주차구역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2 제7항과 같은 조 제8항이 모두 적용되고,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등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2019.5.1.) 참조

**Q**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임의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법적 의무 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은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로 보아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Q** 벽부형(과금형)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충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하나요?

**A** 과금형콘센트도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로 인정되며, 해당 충전기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Q** 일반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요?

**A**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충전시설로 보아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4**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Q** 충전방해의 기준은 공동주택(아파트) 내의 충전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가요?

**A**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1시간이 경과하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가요?

A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충전설비의 결함 또는 전원공급장애, 자동차의 성능 등의 이유로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Q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것이 되나요?

A 친환경자동차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이륜자동차는 법 제11조의2 제7항이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전용주차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충전하지 않더라도 해당 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므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전용주차구역과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1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충전기를 꼽지 않고 주차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충전을 시작하면 허용되는 충전시간은 얼마인가요?

A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법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 경우 “충전을 시작한 때로부터 법정시간이 지났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 주차한 때로부터 (도중에 충전을 시작하였더라도) 1시간 또는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하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Q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이지만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지 않은 자동차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충전을 위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라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가능한 시간은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Q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기기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두고 충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해당 행위는 법 제11조의2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충전구역의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리는 얼마인가요?

A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개별사례별로 충전이 방해되는지 여부를 현장여건에 비추어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A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주차하여도 충전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도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Q**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보유한 전기차 대수보다 의무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이 많을 경우 초과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내연기관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대수보다 많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과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자동차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주차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 ② 입주자들의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주차가능시간(고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한합니다.

## V. 기타 Q&A

**Q** 충전방해행위가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는 그 최초의 행위에 의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법 제1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은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정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나요?

**A** 시정명령은 법위반상태의 교정을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시정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닌) 시정을 명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이 종료한 날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신규차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②「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 ③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전기자동차의 경우 1회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등의 기준)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고시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는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규정(고시)에 등재된 자동차로 제한됩니다.

Q 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Q 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기관에 학교나 아파트가 포함되나요?

A 학교나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법 제11조의3 제2항의 ‘영구시설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영구시설물은 ‘건물·구거·교량과 같이 일단 건설하게 되면 해당 공유재산과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영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유재산의 훼손 없이 이를 쉽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시설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그것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의미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해당 사회기반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서 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배전반, 분전반, 파워뱅크 등의 전력시설이나, 케노피 등의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② 시·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8조의6에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22. 1. 25.>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제18조의7에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1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다.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6호, 2022. 9. 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044-203-43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쏘라타 하이브리드 2WD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CR-V HYBRID 4WD(1,993 cc).
4. Lexus CT200h(1,798 cc), ES300h(2,494 cc, 2,487 cc), UX250h(1,987 cc), NX350h(2,4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6. 한국GM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향상형 2WD, EV6 향상형 4WD, EV6 GT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 닛산 LEAF 전기자동차(40.3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향상형 2WD, 아이오닉5 향상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6 기본형 RWD, 아이오닉6 향상형 RWD, 아이오닉6 향상형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CHEVROLET BOLT EUV 전기자동차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3 RWD, Y Long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8.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다니고C
  10. 기아 봉고III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장형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와이드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봉고III EV 냉동차, 봉고III EV 저장형 냉동차, 봉고III EV 양문형 미단이 답차
  11.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2. 현대자동차 포터II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3.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15.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6.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8.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19. 디피코 포르트로-탑, 포르트로-픽업 전기자동차
  20. 쉐보모빌리티 CEVO-C SE, CEVO-C SE 1인승 밴형, CEVO-C 전기자동차
  21. 마이브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350, EQB300, EQE 350+ 전기자동차
  23. 한신자동차 플러스2.0 전기트럭
  24. 케이모터 MG ZS EV 전기자동차
  25.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전기트럭
  26. Lexus UX300e 전기자동차
  27. 비바모빌리티 비바 전기자동차, 켈라, 브라보 전기트럭
  28. 볼보 C40 Recharge Twin, XC40 Recharge Twin 전기자동차
  29. 폴스타 Polestar2 Long Range Single Motor, Polestar2 Long Range Dual Motor 전기자동차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 4 밴, MASADA 픽업 전기자동차
  31. Audi Q4 Sportback e-tron40, Q4 e-tron40 전기자동차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전기트럭
  33. 폭스바겐 ID.4 Pro
-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SMART 110(260.9kWh, 272.4kWh), SMART 110E
  2. 자일대우 BS110, BS110CN(123kWh, 249kWh), FX120
  3. 우진산전 Apollo 1100(204kWh, 257kWh, 258kWh, 296kWh, 301kWh), Apollo 900, Apollo 750(147.1kWh, 147.8kWh)
  4. BYD eBUS-12, eBUS-9, eBUS-7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128kWh, 217.8kWh, 256kWh, 290.4kWh), 일렉시티 타운, 일렉시티 굴절버스, 일렉시티 이층버스, 카운티일렉트릭(64kWh, 128kWh)
6. 피라인 HYPERS
7. 대양기술 그린어스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9. 비바모빌리티 VBUS, 브이버스60
10. 이비온 E6(60.1kWh, 86.1kWh)
11.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그린타운플러스
12. 한신자동차 바네스
13.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시티라이트9
14.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255kWh, 248kWh), 일레누스 TS1100-2
15. GS글로벌 eBUS-12, eBUS-9, eBUS-7, NEW BYD eBUS-7, NEW BYD eBUS-12
16. 한차 GREENWAY1100
17. 이엠코리아 에픽시티
18. 에스에이피 ELFE(엘페)
19. 태영티엔티 GD11
-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 Lexus NX4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4.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화물차

**제5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시)**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② 이 표시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기버스 시험기관)** ① 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자동차융합기술원

②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 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③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3]과 같다.
- ④ 공단은 제1항의 시험기관이 측정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와 시험원을 대상으로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제7조(충전시설의 기준)**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충전시설 중 다채널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시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1. 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
  - 2. 제1항제2호의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

**제8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56호, 2022. 9.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